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객 유치지원 경쟁에서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확대(안 제4조)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위임

다.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0조제2항,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제7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3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를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제9조 중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을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 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거창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가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2020년 이후 30백만원 지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문화관광과장 이 해 용